

조선의 다양한 언론 활동

1. 들어가며

“권력은 충구에서 나온다.” 20세기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중국의 최고 실력자 모택동이 한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권력은 언론에서 나온다.”로 수정된 지 오래다. 정권을 쟁취한 뒤, 쟁취한 정권의 유지가 최고의 목표인 지략가들이 엄청난 파괴력과 재 창조력을 동시에 발휘하는 언론의 힘을 모를 리 없다. 언론은 다루는 데 있어 고도의 테크닉과 타이밍을 요하는 최고의 전략 무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언론은 권력의 도구로만 존재하는가. 대답은 물론 ‘아니다.’ 권력이 언론에 집착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현대인들은 개인과 집단의 민주적 의견 개진과 수렴을 위해 무엇보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부르짖는다. 언론이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수단이며, 합리적이고 성숙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 가시적인 접촉점이자 이음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언론인)에 흔들리지 않는 직필과 강한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막중한 역사적·사회적 책임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국민의 알 권리’를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민주화되었다고 말하는 지금, 많은 매스 미디어 장치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그들의 ‘홍밋거리’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한류’라는 미명 아래 10대 연예인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들이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특정 연예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해프닝을 전국적으로 중계하기도 한다. 전통시대였던 조선의 언론은 어떠했을까?

2. 조선의 언론

흔히들 왕의 명령이 곧 법이라 여겨졌다고 생각하는 절대왕정체제 하의 조선에서도 언론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왕이 가는 곳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 죽음을 각오를 하고 따라 붙는 사관이 있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으로 남겼다. 조선시대 사관의 붓은 왕권으로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없는 카메라이자 녹음기였던 것이다. 그리고 왕은 물론 모든 관료들의 실비득실을 탄핵하는 언론기관이 있어, 정도에서 벗어나는 행위나 정책 집행을 탄핵했다. 감사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의 암행 감사가 365일 24시간 풀가동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언론기관의 설치와 운용은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적으로 훨씬 발달된 오늘날과 비교하더라도 그 수준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언론활동을 담당했던 중앙 정치기구가 별도로 운영되었는가 하면, 일반인들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여



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 하달하는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언로가 제도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3. “전해! 아니 되옵니다.” – 신하들의 반론권, ‘상소’

펜은 칼보다 무섭고, 몇 방울의 잉크가 역사를 뒤집는다고 했다. 잠시의 힘에 굴복하기보다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은 붓을 가진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이상이 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소 문을 나서던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한 것 역시,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현직에 있든, 낙향하여 시골에서 생활을 하든,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예비관료군이든 자신이 처한 처지와는 상관없이 국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누구나 언론활동을 할 수 있었다. 사극을 통해 볼 수 있는 익숙한 장면 중 하나가 임금의 앞아 있는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두루마리 중 하나를 펼쳐 읽으며 ‘상소’ 운운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신하가 왕께 건의나 청원, 진정 등을 담아 올리는 문건이 바로 상소이다. 봉장(封章)·주소(奏疏)·진소(陳疏)·장소(章疏)라고도 불렸던 상소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제도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만만한 언로는 아니었다. 읽든, 읽지 않든 임금의 코앞 까지 올라가는 문건인 만큼 절차가 간단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상소는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에게 의견을 올리는 데에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방법 중 하나였다.

그런데 상소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일단 각 군현의 수령이 문건을 수령하여 도의 감사에게 올리면, 감사는 중앙의 형조 또는 사헌부에 올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월소’라 하여 받아주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의 엄격성은 더욱 강화되어 후기에는 절차를 무시한 자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임금의 명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때는 한성부가 형조의 관할이었던 노비에 관한 소송과 상소의 심의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성부는 상소의 1심과 2심 기능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상소의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고쳐진 것도 있고, 간혹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다. 상소의 본래 내용이 아닌 기사가 수록된 것은 실록 편찬 시 편찬관들이 내용의 일부만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등에 상소를 수록했다는 것은 지배층이 이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상소가 지닌 역사에 보존할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소는 임금에게 올리기까지 절차상의 까다로움을 피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는 과정상의 한계도 내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바탕으로 현실 정국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왕에게 당당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시정까지 도모했다는 점에서, 왕권을 견제하고 계층 상호간의 의견을 교류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언론활동의 하나였던 것이다.

